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건축법」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건축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건축물의 건축시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의 제한을 완화(안 별표 3)
 -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삭제
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 완화(안 제37조)
 -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인 때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.
- 인용조문 및 부처명칭 변경사항 반영(안 제25조 및 제2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구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.(2013.9.13)

5. 검토의견

□ 본 ‘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,

- 「건축법」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, 건축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것으로서,
-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,
 -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삭제하여 건축선 기준을 완화하고,
 - 하나의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을 마주보고 건축할 경우, 일조권 확보를 위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을 할 때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일부완화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, 관련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선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,
- 기준완화에 따른 보행인의 통행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 곤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,
-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 등을 감안하여 볼 때, 일부개정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